

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배출부과금 [] 조정 부과 통지서
[] 환 급

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54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[]조정 부과, []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.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통지내용		[] 조정 부과 [] 환 급				
계	부 과 금	미 수 부과금	[]조정 부과금 []환급금	[]조정부과 []환 급 결정일자	[]수 급 []환 급 은행 및 계좌번호	기 타

사 유 ([] 조정 부과 [] 환급)

납부통지서 코드번호:

끝 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/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/ 결재자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 - 일련번호 (시행일자)

접수 처리과명 - 일련번호 (접수일자)

우 주소

/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전자우편주소

/공개구분